

# 서울특별시 서울사랑상품권의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(김혜련 의원 발의)

의안 번호	2163
----------	------

발 의 년 월 일 : 2021년 02월 05일  
발 의 자 : 김혜련 의원(1명)  
찬 성 자 : 강동길, 고병국, 권순선,  
김제리, 김화숙, 송도호,  
송아량, 우형찬, 이광호,  
이병도, 이정인 의원(11  
명)

## 1. 제안이유

- 2020년 7월, 「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」 및 같은 법 시행령이 시행되어 코로나19로 침체에 빠진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음.
- 이에 따른 소비 확산으로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에게 많은 도움이 되고, 소비자는 할인 구매로 경제적 부담을 덜 수 있는 현명한 소비가 되고 있음.
- 서울사랑상품권의 소비자 이용률이 높아짐에 따라 상품권 발행 및 운영 과정의 공공 책임성을 강화하고자 각종 결제정보를 제출할 의무화가 필요하고 전문가 참여 및 시민 의견을 반영하기 위해 서울사랑상품권 운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근거를 마련하고자 개정하려는 것임.

## 2. 주요내용

- 가. 운영대행사와 판매대행점이 갖고 있는 가맹점의 지역별·업종별 등의 결제정보와 사용자의 구입 및 결제정보 등을 제출하는 사항을 명시함 (안 제8조제3항).
- 나.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서울사랑상품권 운영위원회를 둘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함(안 제12조부터 제18조 신설).

### 3. 참고사항

- 가. 관계법령 : 「지역사랑상품권의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」 및 같은 법 시행령
- 나. 예산조치 :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참조
- 다. 기타 : 신·구조문 대비표

## 서울특별시 서울사랑상품권의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서울특별시 서울사랑상품권의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8조 제3항 중 “회수량등을”를 “회수량 등과 가맹점의 지역별·업종별 결제정보와 사용자의 구입 및 결제정보 등을”로 한다.

제12조부터 제14조를 제19조부터 제21조로 한다.

제12조부터 제18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12조(서울사랑상품권 운영위원회 설치) 시장은 상품권 운영과 관련하여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·조정하기 위하여 서울사랑상품권 운영위원회(이하 “위원회”라 한다)를 둘 수 있다.

1. 상품권 발행 및 유통 활성화에 관한 사항
2. 운영대행사 운영 및 지도·감독에 관한 사항
3.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

제13조(위원회의 구성)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.

② 위원장은 상품권 업무 소관 실·국장이 되며,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.

③ 당연직 위원은 상품권 업무 소관 담당관으로 하고,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.

1. 서울시의회 의원
2. 지역화폐 분야의 전문가
3. 소상공인 및 소비자단체 관련기관, 비영리단체, 학회, 협회 등의 추천을 받은 사람
4.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

제14조(위원장의 직무) ①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,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.

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직무를 대리한다.

제15조(위원의 임기 등) 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,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.

② 시장은 위촉직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.

1. 위원의 사임의사가 있을 경우
2. 위원이 질병 등의 이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
3. 직무와 관련한 부적절한 행위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

제16조(위원회의 운영) ① 위원회는 시장의 요구가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.

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
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, 간사는 상품권 업무 소관 담당관이 된다.

제17조(위원의 제척·기피·회피) ① 위원이 해당 심의 안건에 관하여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그 안건의 심의·의결에서 제척된다.

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·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유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밝혀 그 위원에 대한 기피 신청을 할 수 있다. 이 경우 위원회의 의결로 해당 위원의 기피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.

③ 위원이 제1항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회피하여야 한다.

제18조(위원의 수당)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등에 대해서는 관련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.

## 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## 신·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8조(운영대행사·판매대행점의 선정 및 준수사항 등) ③ 운영대행사와 판매대행점은 법제6조제3항에 따라 판매량, 재고량, <u>회수량</u>등을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</p>	<p>제8조(운영대행사·판매대행점의 선정 및 준수사항 등) ③ 운영대행사와 판매대행점은 법제6조제3항에 따라 판매량, 재고량, <u>회수량</u> 등과 가맹점의 지역별·업종별 결제정보와 사용자의 구입 및 결제정보 등을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</p>
<p>&lt;신 설&gt;</p>	<p>제12조(서울사랑상품권 운영위원회 설치) 시장은 상품권 운영과 관련하여 <u>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·조정하기 위하여 서울사랑상품권 운영위원회(이하 “위원회”라 한다)를 둘 수 있다.</u>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1. <u>상품권 발행 및 유통 활성화에 관한 사항</u></li> <li>2. <u>운영대행사 운영 및 지도·감독에 관한 사항</u></li> <li>3. <u>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</u></li> </ol>
<p>&lt;신 설&gt;</p>	<p>제13조(위원회의 구성) ① 위원회는 <u>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.</u></p> <p>② <u>위원장은 상품권 업무 소관 실·국장이 되며,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.</u></p> <p>③ <u>당연직 위원은 상품권 업무 소관</u></p>

현행	개정안
	<p><u>담당관으로 하고,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.</u>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<u>1. 서울시의회 의원</u></li> <li><u>2. 지역화폐 분야의 전문가</u></li> <li><u>3. 소상공인 및 소비자단체 관련기관, 비영리단체, 학회, 협회 등의 추천을 받은 사람</u></li> <li><u>4.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</u></li> </ol> <p><b>&lt;신설&gt;</b> 제14조(위원장의 직무) ① <u>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,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.</u></p> <p>② <u>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직무를 대리한다.</u></p> <p><b>&lt;신설&gt;</b> 제15조(위원의 임기 등) ① <u>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,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.</u></p> <p>② <u>시장은 위촉직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.</u>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<u>1. 위원의 사임의사가 있을 경우</u></li> <li><u>2. 위원이 질병 등의 이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</u></li> <li><u>3. 직무와 관련한 부적절한 행위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</u></li> </ol>

현행	개정안
<p><u>&lt;신설&gt;</u></p>	<p>제16조(위원회의 운영) ① 위원회는 시장의 요구가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.</p> <p>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</p> <p>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, 간사는 상품권 업무 소관 담당관이 된다.</p>
<p><u>&lt;신설&gt;</u></p>	<p>제17조(위원의 제척·기피·회피) ① 위원이 해당 심의 안건에 관하여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그 안건의 심의·의결에서 제척 (除斥) 된다.</p> <p>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·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유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밝혀 그 위원에 대한 기피 신청을 할 수 있다. 이 경우 위원회의 의결로 해당 위원의 기피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.</p> <p>③ 위원이 제1항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회피(回避)하여야 한다.</p>
<p><u>&lt;신설&gt;</u></p>	<p>제18조(위원의 수당)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등에 대해서는 관련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.</p>



현행	개정안
<p><u>제12조(시행규칙)</u>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이외에 상품권의 발행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.</p> <p><u>제13조(환수 조치)</u> 시장은 가맹점 및 사용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상품권 할인액 등 부당이득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.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1. 가맹점이 제6조의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</li> <li>2. 사용자가 제7조의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</li> </ol> <p><u>제14조(과태료)</u> ① 시장은 법 제20조제1항 및 제2항에 해당하는 자에게 과태료를 부과·징수할 수 있다.</p> <p>② 과태료의 위반행위별 부과기준은 법 시행령 제7조 별표와 같으며, 부과징수 절차는 「질서위반행위규제법」에 따른다.</p>	<p><u>제19조(시행규칙)</u>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이외에 상품권의 발행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.</p> <p><u>제20조(환수 조치)</u> 시장은 가맹점 및 사용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상품권 할인액 등 부당이득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.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1. 가맹점이 제6조의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</li> <li>2. 사용자가 제7조의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</li> </ol> <p><u>제21조(과태료)</u> ① 시장은 법 제20조제1항 및 제2항에 해당하는 자에게 과태료를 부과·징수할 수 있다.</p> <p>② 과태료의 위반행위별 부과기준은 법 시행령 제7조 별표와 같으며, 부과징수 절차는 「질서위반행위규제법」에 따른다.</p>

문서번호

2021020300000018

## 미첨부 사유서 (1호)

요청인 : 김혜련 의원

담당 : 조도형 과장  
여차민 팀장  
박주용 예산분석관

접수일 : 2021.02.03

회신일 : 2021.02.04

내용문의 : 02-2180-7943

### 서울특별시 서울사랑상품권의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

#### 목 차

1. 비용발생 요인
2. 미첨부 근거 규정
3. 미첨부 사유
4. 작성자



서울특별시의회 사 무 처  
예산정책담당관  
Seoul Metropolitan Council

1. 비용발생 요인

- 서울특별시 서울사랑상품권의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 12조(서울사랑상품권 운영위원회 설치) 신설에 따라 비용 발생

2. 미첨부 근거 규정

- 「서울특별시 의안의 비용 추계에 관한 조례」 제3조제2항

3. 미첨부 사유

가.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억원 미만인 경우(제3조제1항제1호)

나. 추계결과 = 19,300천원(연평균 3,860천원)

-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3,860천원임
- 추계의 전제
  - 비용은 2021년부터 발생하고 추계기간(2021~2025년) 이후에도 계속 발생
  - 서울사랑상품권 운영위원회는 11명(소관국장 1명, 소관담당관 1명, 시의원 1명, 민간위원 8명)으로 구성하고 연 2회(상·하반기) 개최하는 것으로 전제

다. 상세 비용추계 결과

- 총비용 = 19,300천원(연평균 3,860천원)

(단위 : 천원)

구분		연도	2021	2022	2023	2024	2025	계
세입	-		-	-	-	-	-	-
	소계(a)		-	-	-	-	-	-
세출	서울사랑상품권 운영위원회 설치 (제12조)		3,860	3,860	3,860	3,860	3,860	19,300
	소계(b)		3,860	3,860	3,860	3,860	3,860	19,300
□ 총 비용(b-a)			3,860	3,860	3,860	3,860	3,860	19,300

- 위원회 운영비용 : 참석수당 16,000천원+업무추진경비 3,300천원=19,300천원
  - 참석수당 : 수당단가 200천원×8명×연 2회×5년=16,000천원
  - ※ 참석수당 단가 : 「2021년도 서울시 예산편성 잠정기준」에 따라 2시간 초과 200천원 적용

- ※ 지급인원 : 위원 11명 중 시의원(1명) 및 소관국장(1명), 소관담당관(1명)은 제외
- 업무추진경비 : 경비단가 30천원×11명×연 2회×5년=3,300천원
- ※ 업무추진경비 단가 : 「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17조(사교·의례 등 목적으로 제공되는 음식물·경조사비 등의 가액 범위) [별표1] 음식물 경조사비 선물 등의 가액 범위(제17조 관련)에 따라 3만원 수준으로 적용

#### 4. 작성자

시의회사무처	예산정책담당관
담 당 관	조도형
조사분석팀장	여차민
예산분석관	박주용

☎ 02-2180-7943  
e-mail : pjooyong@seoul.go.kr